

# 국어문화원 제도와 공공 언어

남영신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원장

## 1. 개요

우리나라에 국어문화원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공공 기관의 언어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은 <국어기본법>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대체로 시민 단체 등에서 벌인 한글 전용 운동이나 국어 순화 운동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 단체의 국어 관련 운동 대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국어 관련 운동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게 되었고, 특히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이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어 관련 운동은 정부나 국어문화원이 수행하는 공식 영역과 국어 운동 단체가 추진하는 비 공식 영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공식적인 국어 개선 운동의 추진 상황, 특히 공공 언어 개선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공 언어 개선 분야에서 국어문화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 1.1. 국어상담소 지정

국어문화원은 초기에 국어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된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국가(주무 기관: 국립국어원)는 2005년 10월 1일에 전국에 11곳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였다. 대학 9곳, 방송사 1곳, 시민 단체 1곳이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3곳, 충북 2곳, 충남 1곳, 광주 1곳, 부산 1곳, 경남 1곳, 대구 1곳, 경북 1곳이었다.

[표 1] 전국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2005년 10월 1일 현재)

| 번호 | 상담소 이름        | 특성    | 지역     |
|----|---------------|-------|--------|
| 1  |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대구     |
| 2  | 경상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경남     |
| 3  |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 시민 단체 | 서울     |
| 4  | 동아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부산     |
| 5  |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천안     |
| 6  | 영남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경북     |
| 7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서울     |
| 8  | 전남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광주, 전남 |
| 9  |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충북     |
| 10 | 충북대학교 국어상담소   | 대학    | 충북     |
| 11 | 한국방송 국어상담소    | 방송사   | 서울     |

## 1.2. 국어상담소의 역할

〈국어기본법〉이 제시한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어상담소가 어떤 일을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어상담소가 참여하는 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회를 중심으로 국어상담소가 추진할 일들이 무엇인지 각 상담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국어상담소가 국민에게 인식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려면 모든 국어상담소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지만 그런 일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많은 논의 끝에 국어상담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파악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국어 상담 서비스: 법의 규정으로 보나 기관의 이름으로 보나 일단 국어 상담이 국어상담소를 대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각 국어상담소가 자체 역량을 발휘하여 해당 지역민에게 국어 관련 상담을 한다는 점을 알리고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어상담소 간에 차이는 있지만 초기 국어상담소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국어상담소를 홍보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국어가 상담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어상담소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국민들의 국어상담소에 대한 인지도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 대학에 설치된 국어상담소는 자기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치중하게 되었다.

② 국어 바로 쓰기 교육: 국어상담소가 주로 대학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교육은 주로 청소년, 군인, 공무원 그리고 글쓰기 능력을 높이려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국어상담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담소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한국어 강사 양성 교육: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 교육이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어상담소가 직접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초기 국어상담소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상담과 교육, 귀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업도 사회의 수요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내용이 바뀌기도 했다. 특히 국어상담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국어 상담 기능이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 서비스 강화와 공공 언어 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비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지방 자치 단체의 국어 수요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국어상담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이들 행사가 국어를 매개로 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뜻있는 행사로 정착됨으로써 한글날을 전후로 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국어상담소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추가되었다.

### 1.3. 국어상담소에서 국어문화원으로

이런 상황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어상담소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담소’가 갖는 이미지가 국어를 문화적으로 폭넓게 바라보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상담소의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서 ‘국어상담소’의 명칭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는 데 모든 상담소가 동의하여 명칭 개정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2008년 3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어문화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국어기본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의 국어상담소 지정 규정과 내용은 완전히 같고 명칭만 ‘국어상담소’ 대신에 ‘국어문화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문화원이 어떤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어문화원의 사업 수행으로 대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칭이 국어문화원으로 바뀐 뒤 주무 기관이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로 변경되면서 국어문화원의 기능 중 국어 문화 행사를 지역별로 추진하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국어문화원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현재 지정된 국어문화원은 총 20곳이다.

[표 2] 전국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2015년 9월 30일 현재)

| 번호 | 상당소 이름        | 특성    | 지역     |
|----|---------------|-------|--------|
| 1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대구     |
| 2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경남     |
| 3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시민 단체 | 서울     |
| 4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부산     |
| 5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충남     |
| 6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경북     |
| 7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서울     |
| 8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광주, 전남 |
| 9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충북     |
| 10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충북     |
| 11 |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 방송사   | 서울     |
| 12 |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강원     |
| 13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전북     |
| 14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제주     |
| 15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울산     |
| 16 |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대전     |
| 17 |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인천     |
| 18 |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경기     |
| 19 |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 대학    | 전남     |
| 20 |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 시민 단체 | 서울     |

#### 1.4. 국어문화원 정체성 확립

사회의 국어 수요에 맞추어 국어문화원을 될수록 많이 지정하려고 하던 문화부의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20곳 지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국어문화원의 양적 성장은 곧 국어문화원 기능의 질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까지 국어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어문화원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국어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1.4.1. 지역 사회의 국어 교육 기관

[표 3]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어문화원의 공무원(군인 포함) 대상 공공 언어 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와 함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도 튼튼히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육을 종합하면 2012년의 교육 인원이 3만 3천 141명에서, 2013년 3만 2천 270명이었다가, 2014년에 5만 602명으로 증가하

[표 3] 국어문화원의 사업 실적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비고 |
|----------------|------------|---------|---------|---------|----|
| 국어 상담          |            | 14,176건 | 9,044건  | 13,761건 |    |
| 찾아가는<br>국어문화학교 | 민간인 대상     | 19,833명 | 17,402명 | 25,622명 |    |
|                | 공무원, 군인 대상 | 13,308명 | 14,868명 | 24,980명 |    |
|                | 이주민 대상     | 4,478명  | 335명    | 113명    |    |
| 지역 국어 대회(행사)   |            | 2,490명  | 2,822명  | 4,888명  |    |
| 행사 참가 인원       |            | 54,285명 | 44,471명 | 69,364명 |    |

출처: <전국 국어문화원 사업 백서> 2012, 2013, 2014에서 가공한 것임.

였다. 이는 그동안 국어문화원이 국민들의 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문화원이 학교 밖 국어 교육 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은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서 국어문화원이 국립국어원의 일을 지역별로 대행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을 위한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문화원이 국립국어원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 1.4.2. 국어 행사 주관 기관

[표 3]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어문화원이 지역별로 벌이는 각종 국어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문화원이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벌이는 국어 행사가 지역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국어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어문화원을 빼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까지 국어 관련 행사를 지방 자치 단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의 ‘안녕! 우리말’ 사업과 연계한 여러 행사를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사가 다양해지고, 이 행사를 지역의 국어문화원이 주관하게 됨으로써 국어문화원이 지역의 국어 관련 행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역 국어 행사로는 사투리(지역어) 대회, 지역 문화와 언어 축제, 좋은 간판 언어 뽑기, 우리말 겨루기 대회, 황금 사진 선발 대회 등이 있으며, 점차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국어와 관련한 더 멋진 대회가 지역 국어문화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 속에서 속속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 1.4.3. 국어 상담 기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상담 기능은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와 ‘온라인 가나다(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반비례하여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립국어원이 상담하지 않는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상담이 차츰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화로 간단한 국어 문제를 질문하고 상담하는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문장 구성의 잘잘못이나 글의 줄거리를 바로잡아 주는 서비스, 논문 지도 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기능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줄어들 대신 학생이나 전문가의 글을 바로잡아 주는 국어 상담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과 전문가들 사이에 국어를 바르게 쓰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국어문화원이 새로운 부문으로 국어 상담 기능을 넓혀 나가게 되었다.

## 2. 국어문화원과 공공 언어

공공 언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된 것은 2009년 5월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설치된 것이 계기였다. 이때부터 공공 언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정 언어가 공공 언어의 중심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공공 언어에 대한 활동은 주로 공공 기관의 언어에 집중하여 공공 언어 바로 쓰기 교육, 공공 기관의 누리집 언어 검수, 행정 언어 순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공공 기관에 두게 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은 국어문화원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공공 언어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 2.1. 공공 언어 정책과 국어문화원

공공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퍼블릭 랭귀지(public language)’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많은 부분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과 닮아 있다.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행정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2010년에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 of 2010)’으로 완성을 보았다. 이 법이 성립하기 전에 카터,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이 쉬운 영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공공 언어 정책은 백악관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 개혁의 실무 총책임자가 부통령이었고, 각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책임자가 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다양한 관련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매우 수준 높은 지침서<sup>1)</sup>를 만들었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어기본법>에 기대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국립국어원이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을 책임질 담당자로 기관장이 아닌 홍보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은 아주 단편적이고 개별 기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공공 언어 개선의 방향이나 목표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총론적으로는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정립을 목표로 하지만 각론에서는 쉬운 언어의 정의, 바른 언어의 정의, 구체적인 문장 단위에서 어떤 문장이 쉽거나 바른지 종합적

1)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March 2011(이 지침은 2011년 5월 1일에 수정되었음).

인 지침이 없을 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어느 정도 이를 만들더라도 이 지침이 범정부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의견 불일치는 국민의 국어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도 공공 언어 정책의 총책임자를 대통령으로 두고(아니면 최소한 국무총리로 두고) 범정부적인 체계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 언어 개선 일선에서 수고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어책임관을 통하여 각 기관에 확산시키는 것이 현재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여기에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있다고 보겠다. 즉,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이 마련한 공공 언어 개선 지침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국어책임관과 협력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공무원을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가 이 개선 지침을 조례로 채택, 공문서 작성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 2.2.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홍보 담당 부서장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가운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쉬운 영어 정책이 기관장 책임 아래 추진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 행정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한이 낮고, 자신의 본업무도 아닌 국어책임관 업무를 과외로 받아 수행해야 하는 국어책임관이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이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어책임관 제도는 실효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이런 상태의 국어책임관을 어떻게 하든지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연찬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진행되고 있다.

### 2.2.1.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합동 연찬회

국어문화원과 중앙 부처의 국어책임관, 광역 자치 단체의 국어책임관은 1년에 1회씩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선으로 합동 회의를 하여 해당 공공 기관의 언어 상황을 점검하고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또한, 각 지역 국어문화원과 기초 자치 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도

[표 4]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 연찬회

| 연도   | 날짜           | 장소 | 참석 인원  |
|------|--------------|----|--|
| 2013 | 4. 26. ~ 27. | 광주 | 국어책임관: 104명<br>(중앙 48명, 지방 56명)<br>국어문화원: 38명<br>문화체육관광부: 6명 |
| 2012 | 6. 19. ~ 20. | 부여 | 국어책임관: 46명<br>국어문화원: 34명<br>문화체육관광부: 8명                      |

2014년도 4월 제주에서 열 예정이던 연찬회는 불의의 사고로 취소함.

1년에 1회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광역 자치 단체 국어책임관이 주관하는데, 주로 기초 자치 단체 국어책임관의 공공 언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아직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어문화원과 공공 기관 사이에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과 그 통로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중앙 행정 기관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 번호 | 본부 국어책임관 | 직위      | 소속 기관 국어책임관 |
|----|----------|---------|-------------|
| 1  | 국무총리실    | 공보비서관   |             |
| 2  | 감사원      | 공보관     |             |
| 3  | 방송통신위원회  |         |             |
| 4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      |             |
| 5  | 금융위원회    | 정책홍보팀장  |             |
| 6  | 국민권익위원회  | 대변인     |             |
| 7  | 원자력안전위원회 | 홍보협력팀장  |             |
| 8  | 국가인권위원회  | 과장      |             |
| 9  | 법제처      | 법령정비담당관 |             |
| 10 | 국가보훈처    | 대변인     | 5개 지방 보훈처   |
| 11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변인     | 7개 지방 식약청   |
| 12 | 기획재정부    | 미디어기획팀장 |             |
| 13 | 미래창조과학부  | 홍보담당관   | 4개 소속 기관    |
| 14 | 교육부      | 홍보담당과장  | 53개 소속 기관   |
| 15 | 외교부      | 정책홍보담당관 |             |
| 16 | 통일부      | 홍보담당관   |             |
| 17 | 법무부      | 홍보전문관   |             |

| 번호 | 본부 국어책임관    | 직위       | 소속 기관 국어책임관 |
|----|-------------|----------|-------------|
| 18 | 국방부         | 대변인      | 3개 소속 기관    |
| 19 | 안전행정부       | 홍보담당관    |             |
| 20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국장   | 26개 소속 기관   |
| 21 | 농림축산식품부     | 홍보담당관    | 5개 소속 기관    |
| 22 | 산업통상자원부     | 홍보담당관    | 5개 소속 기관    |
| 23 | 보건복지부       | 부대변인     | 10개 소속 기관   |
| 24 | 환경부         |          | 13개 소속 기관   |
| 25 | 고용노동부       | 홍보기획팀장   | 6개 지방 노동청   |
| 26 | 여성가족부       | 대변인      |             |
| 27 | 국토교통부       | 홍보담당관    | 14개 소속 기관   |
| 28 | 해양수산부       | 홍보담당관    | 17개 소속 기관   |
| 29 | 국세청         | 세정홍보과장   |             |
| 30 | 관세청         | 국장       | 7개 소속 기관    |
| 31 | 조달청         | 대변인      | 12개 소속 기관   |
| 32 | 통계청         | 과장       | 7개 소속 기관    |
| 33 | 검찰청         | 대변인      |             |
| 34 | 병무청         | 대변인      | 13개 소속 기관   |
| 35 | 방위사업청       | 대변인      | 2개 소속 기관    |
| 36 | 경찰청         | 홍보담당관    | 21개 소속 기관   |
| 37 | 소방방재청       | 공보담당관    | 3개 소속 기관    |
| 38 | 문화재청        | 대변인      | 4개 소속 기관    |
| 39 | 농촌진흥청       | 지식정보화담당관 | 4개 소속 기관    |
| 40 | 산림청         | 대변인      | 11개 소속 기관   |
| 41 | 중소기업청       | 대변인      | 11개 소속 기관   |
| 42 | 특허청         | 대변인      |             |
| 43 | 기상청         | 대변인      | 5개 소속 기관    |
| 4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변인      |             |
| 45 | 새만금개발청      | 과장       |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이렇게 보면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거의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 자치 단체의 광역과 기초 국어책임관을 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거의 모든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국어책임관을 기반으로 하여 국어문화원이 해당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 가시적 성과의 하나가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언어 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표 31 참조).

그동안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합동 연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의 핵심은 국어책임관이 <국어기본법>이 정한 자신의 임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어책임관은, 행정 전문가에게 국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발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공공 언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어문화원이 국어책임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어문화원이 공공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는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 개선이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했던 희생이었다.

### 2.2.2. 국어책임관 제도의 허점 보완을 위한 방안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 그것은 현행 국어책임관이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공공 언어 개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어책임관도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업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의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국어책임관 업무를 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국어책임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국어 전문가가 아니다. 대체로 홍보 전문가이거나 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일 뿐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를 열심히 추진할 만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는 국어에 문외한인 사람에게 자기 전문 분야와 동떨어진 업무를 추가로 맡도록 하여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언어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책임은 기관장이 지고, 실무는 전문가가 추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은 유명무실한 국어책임관 제도라도 이용해서 공공 언어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사이의 소통을 전담할 보좌관을 두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예산을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이런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담화나 지시가 필요하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책임자가 되어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지휘해야 하며, 각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해당 기관의 공공 언어를 개선해 내야 한다.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 보자.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대체로 그 부서의 장이고, 이에 따라 실

무는 주무관이 맡게 된다. 그러면 국어문화원은 그 기관의 가장 하부 조직인 주무관과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어문화원과 국어책임관 사이에는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거의 실무적인 행사 위주로 협력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이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서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2.3. 국어문화원의 공공 언어 개선 사업 성과

#### 2.3.1. 공공 언어 교육

국어책임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공 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공공 언어 교육이다. [표 3]에서 보듯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실무 선에서 추진하기 쉽고 예산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문화원은 이런 교육이라도 자주 시행하여 공공 언어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공무원 대상 공공 언어 교육 계획을 세워 해당 기관에 보내면 그 기관의 사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의 공공 언어 교육이 진행된다. 가끔 정부 기관이 교육 계획을 세워 국어문화원에 교육을 요청하기도 한다. 현재 공공 언어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3.2.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유인책

국어문화원이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의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인식을 높여 주는 유인책으로 공공 언어와 관련한 책자를 발행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특정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에 국한된 지침서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런 노력이 공무원의 언어 인식을 조금씩 바로잡아 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모든 국어문화원이 자기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3.3. 조례 제정 지원

국어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하여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 언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언어 개선을 자기들의 언어생활 개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인식했다. 그러나 국어문화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무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국민 언어를 개선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 언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대구, 인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 자치 단체가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에서도 벌써 26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 작업에는 각 국어문화원의 활약이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 내용은 대체로 <국어기본법>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강한 일부 조례와 공공 언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례도 있다. 조례의 대강은 공문서 한글 사용을 전제로 하여 쉽고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담고 있다.

[표 6] 지방 자치 단체 국어 조례 제정 현황(2014.12.31. 기준, 총 38개(광역12, 기초26))

| 구분          | 광역명 | 기초명              | 조례명                       | 제정일           |
|-------------|-----|------------------|---------------------------|---------------|
| 광역<br>(12개) | 강원  |                  |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 2013. 3. 15.  |
|             | 부산  |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 2013. 10. 30. |
|             | 경남  |                  |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 2013. 10. 31. |
|             | 전남  |                  |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 2013. 12. 19. |
|             | 세종  |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 사랑 지원 조례       | 2014. 1. 10.  |
|             | 충남  |                  | 충청남도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2014. 2. 14.  |
|             | 전북  |                  |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 2014. 6. 27.  |
|             | 서울  |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2014. 7. 17.  |
|             | 울산  |                  |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2014. 8. 7.   |
|             | 경기  |                  |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2014. 10. 17. |
|             | 광주  |                  |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2014. 1. 1.   |
|             | 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 2014. 11. 12. |
| 기초<br>(26개) | 전북  | 군산시              | 전라북도 군산시 우리말 계승 발전 지원 조례  | 2008. 7. 15.  |
|             | 서울  |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 2010. 5. 20.  |
|             | 전북  | 진안군              | 전라북도 진안군 우리말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 | 2012. 11. 15. |
|             | 강원  | 원주시              | 강원도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 2013. 12. 13. |
|             | 경남  |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 2013. 12. 30. |
|             | 부산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 2013. 10. 1.  |
|             | 서울  |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 2013. 12. 27. |
|             | 서울  |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 2013. 8. 7.   |
|             | 서울  |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 2013. 9. 26.  |
|             | 서울  |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 2013. 10. 4.  |
|             | 서울  |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 2013. 12. 19. |
|             | 서울  |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 2013. 12. 31. |
|             | 울산  |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2013. 6. 28.  |
|             | 강원  | 양구군              | 강원도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 2014. 12. 30. |
|             | 경기  |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세종 한글 사랑 진흥 조례    | 2014. 10. 30. |
|             | 경기  |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한글 사랑 지원 조례       | 2014. 10. 10. |
| 경기          |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 2014. 11. 10.             |               |

| 구분          | 광역명 | 기초명  | 조례명                      | 제정일           |
|-------------|-----|------|--------------------------|---------------|
| 기초<br>(26개) | 경남  |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 11. 7.  |
|             | 광주  |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 2014. 9. 19.  |
|             | 광주  |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 11. 24. |
|             | 부산  |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 2014. 5. 20.  |
|             | 부산  |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사랑 조례         | 2014. 2. 7.   |
|             | 서울  |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 2014. 2. 27.  |
|             | 충남  | 보령시  |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 2014. 12. 22. |
|             | 충남  | 부여군  | 부여군 국어 사용 촉진 조례          | 2014. 12. 30. |
|             | 충북  |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한글 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2014. 4. 4.   |

### 3. 맺음말

법과 제도의 미비함, 예산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어문화원이 공공 언어 개선에 선도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 많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니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가 쌓이면 언젠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고마워할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성취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공공 언어 개선도 그런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일찍이 국가가 언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회는 통합과 소통에 어려움이 비교적 적어서 국가 발전을 손쉽게 이루었다. 반면 국가가 자기 언어 발전을 억제하거나 방해한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국민의 창의성도 발휘되지 않아 결국 국가가 분열하고 침체되는 비운을 맞았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우리나라는 과거 약 50년 동안 한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문맹률이 줄어들고 지

식 습득의 기회가 넓어져 놀랄 만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언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만하게 사용되는 면이 있다. 특히 공공 언어에서 어려운 전문어를 남발하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문으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회 분열과 침체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이 범국가적인 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날까지 국어문화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확인한다.